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8-27

수 원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18954 주권인도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항소인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종명, 이해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진안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원고 D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D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 D이,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B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3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며, 원고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C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2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D로부터 3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D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8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D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D로부터 3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D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8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 A, B, C의 청구 관련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1 내지 4, 5, 7의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긴밀한 협조'는 '회사에 실질적인 공로를 하여 기술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 A, B, C(이하 본 항에서 '위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그와 같은 기여가 없었기 때문에 위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그 행사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긴밀한 협조'라는 문언 자체에 '실질적인 공로를 하여 기술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만일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조건으로 '긴밀한 협조'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공로를 하여 기술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을 것'까지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상당함에도 이를 명시한 바 없는 점(피고가 위 기여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기대나 계약체결의 동기가 당연히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공로를 하여 기술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조건으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고, '긴밀한 협조'라는 행사요건의 의미와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제8면 하6행 내지 제10면 7행)은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의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은 2013. 5. 5.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을 제36호증)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어서 위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협조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A은 위 기술이전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설령 위 기술이전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어떤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기술이전계약상 의무가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상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제8조에서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피고 회사 스톡옵션 운영규정, 관련 법령 및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스톡옵션 운영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D의 청구 관련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면 하5행부터 제13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사조건 충족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D은, 피고 회사는 벤처기업이므로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 D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이는 원고 D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D은 위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을 전제로 한 원고 D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원고 D은 등기이사이므로 부당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 D은 성과가 부족하여 퇴직한 것으로 책임 없는 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벤처



기업법이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과 행사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한 원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순번 6은 원고 D이 재직중에 있음을, 순번 7은 행사 당시 원고 D이 피고 회사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행사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강요로 인하여 원고 D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 해당하여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부연하여 살펴본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D의 성과나 근무태도 등을 비난하면서 임금 삭감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D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원고 D은 2016. 12. 5.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실은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관계의 종료는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 D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피고 회사에서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에 따라 종료시킨 점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원고 D에 대한 발언의 내용을 비롯하여 원고 D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사직의 의사가 없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강



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임금 삭감이나 사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을 할 것을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D로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함에도 스스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D의 퇴사를 피고 회사의 강요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D은 퇴사 이후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 의하면 원고 D이 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한 경우 일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에도 원고 D은 퇴사 과정에서 스톡옵션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협상이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D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피고 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 D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박광서

 판사 차지원